

영동군 상촌면 공고 제2012-15호

공 시 송 달

성 명 : 강춘철 외 2명

주소 또는 영업소 : 아래와 같음

서류의 명칭 : 2012년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

서류의 내용 : 아래와 같음

위의 서류를 2012년 6월 14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미거주, 이사감, 주소불명, 거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(납부를 2012년 7월 31일로 변경하여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12년 7월 4일

상 촌 면 장



1. 공고대상 : 붙임목록 참조
2. 공고기간 : 2012. 7. 4. ~ 2012. 7. 18. (15일간)
3. 공고장소 : 상촌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
4. 공고내용
 - 가. 2012년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번호, 과세물건, 납세자 인적사항, 세액 등에 관한 사항
 - 나.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후 자동차세 고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. 자동차세 부과내역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공고만료 익일부터 90일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영동군수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.
 - 라.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영동군 재무과(043-740-3252) 혹은 상촌면 총무부서(043-740-580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(주) 1. 같은 자에 대하여 여러 건일 때에는 이를 나열할 것
2.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도 기록하여도 무방함
3. 서류의 내용란에는 과세연도, 기분, 지방세액 등을 적을 것
4. 납부기일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을 덧붙여 적을 것
5.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밤 12시까지임
(예) 1월 1일에 공고한 경우 1월 15일 밤 12시까지이므로, 즉 1월 16일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임